

인천지방법원 2021. 1. 12 선고 2019가합64098 판결 [사해행위취소]

재판경과

서울고등법원(인천) 2021. 8. 26 선고 2021나10584 판결

인천지방법원 2021. 1. 12 선고 2019가합64098 판결

전 문

원 고 신용보증기금

소송대리인 법무법인 헌암

담당변호사 박정혁, 양선화

피 고 1. 주식회사 A

2. B

3. C

피고들 소송대리인 변호사 김철민

변 론 종 결 2020. 11. 17.

판 결 선 고 2021. 1. 12.

주 문

1. 피고 주식회사 A, B는 연대하여 원고에게 264,200,878원과 그중 264,121,846원에 대하여

2019. 10. 21.부터 2019. 11. 27.까지는 연 8%의, 그 다음날부터 다 갚는 날까지는 연 12%의 각 비율로 계산한 돈을 지급하라.

2. 피고 B와 피고 C 사이에 별지 목록 기재 부동산에 관하여 2019. 7. 17. 체결된 근저당권설정계약을 취소한다.

3. 피고 C은 피고 B에게 별지 목록 기재 부동산에 관하여 인천지방법원 2019. 7. 17. 접수 제260927호로 마친 근저당권설정등기의 말소등기절차를 이행하라.

4. 소송비용은 피고들이 부담한다.

5. 제1항은 가집행할 수 있다.

청 구 취 지

주문과 같다.

이 유

1. 기초 사실

가. 신용보증약정과 그에 따른 대출

1) 원고는 2017. 5. 16. 피고 주식회사 A(이하 ‘피고 회사’라 한다)과 사이에 피고 회사가 주식회사 D(이하 ‘D’이라 한다)으로부터 대출받으려는 돈 중 2억 9,700만 원을 신용보증원금으로 하고, 신용보증기간을 2017. 5. 16.부터 2018. 5. 15.까지로 하는 신용보증약정(이하 ‘이 사건 신용보증약정’이라 한다)을 체결하여 그에 따른 신용보증서(보증번호 : E)를 D에 발행하였다.

2) 피고 회사는 2017. 5. 17. D으로부터 ‘기업일반운전자금대출’ 명목으로 3억 3,000만 원을 대출받았다(이하 ‘이 사건 대출금’이라 한다).

나. 이 사건 신용보증약정과 투명경영이행약정

1) 이 사건 신용보증약정은 2018. 5. 10. 보증원금이 2억 6,730만 원으로, 보증기한이 2019. 5. 15.로, 2019. 5. 14. 보증원금이 2억 6,100만 원으로, 보증기한이 2020. 5. 15.로 각각 변경되었다.

2) 피고 회사는 이 사건 신용보증약정에서 원고에게, ① 원고가 위 약정에 기한 보증채무를 이행하였을 경우 그 지급원리금 및 이에 대한 신용보증기금법 제35조 소정의 연 25% 범위에서 원고가 정한 이율로 계산한 손해금을 지급하고(원고는 이율을 연 8%로 정하여 2019. 4. 1.부터 적용하였다), ② 원고가 대신 지급한 이 사건 신용보증약정에 의한 채권의 집행보전, 행사 및 이를 위한 법적 절차에 소요된 비용을 지급하기로 약정하였다.

3) 피고 회사 대표이사였던 피고 B는 2017. 5. 16. 원고와 다음과 같은 내용이 포함된 투명경영이행약정(창업기업용)을 체결하였다(‘약정인’은 피고 B, ‘보증기업’은 피고 회사, ‘신보’는 원고를 의미한다).

제1조(목적) 이 약정을 아래 신용보증약정과 관련하여 보증기업에 대한 경영의무의 이행을 목적으로 합니다.

1. 보증기업 : 주식회사 A
2. 신용보증약정 : 2017. 5. 16.자 신용보증약정서(개별거래/한도거래용)
3. 보증원금(한도금액) : 2억 9,700만 원
4. 보증(한도거래)기간 : 2017. 5. 16.부터 2018. 5. 15.까지

제2조(경영의무) 약정인은 제1조의 신용보증약정에 따른 연대보증을 서지 않는 대신 아래에서 정하는 경영의무를 성실히 이행하기로 합니다.

1. 금융관련 제 법규의 준수
2. 기업회계기준에 의한 회계처리의 준수
3. 공문서, 사문서의 위 변조 및 허위 자료제출 금지
4. 업무상 횡령, 배임, 뇌물수수, 자금유용 등의 금지
5. 제1조에서 정하는 보증서 담보대출의 용도 외 사용금지
6. 경영에서 탈퇴 또는 투명경영 이행약정 체결 현재 보유 지분의 2분의 1 이상 처

분시 신보의 동의

7. 기타 투명경영에 위반하는 중대한 행위금지

제3조(경영의무위반과 연대보증책임) ① 제2조에서 정하는 경영의무를 위반한 경우
약정인은 위반사유 발생일로부터 제1조의 신용보증약정에서 정하는 채무에 대하여
보증기업과 연대하여 보증책임을 부담하기로 합니다.

② 제1항에 의해 연대보증책임을 부담하는 경우에는 제1조에서 정하는 신용보증약
정서의 각 조항이 적용됨을 승인합니다.

③ 신보에서 경영의무 위반 사실을 통지하여 약정인에게 도달한 경우에 약정인은
연대보증 책임을 부담하기로 합니다. (이하 생략)

제4조(보증기한 경과에 따른 연대보증책임) ① 약정인은 제1조의 신용보증약정에
따른 보증의 기한이 연장되는 경우 투명경영 의무 이행을 연장된 보증기한까지 준
수하기로 하며 이를 위반할 경우 제1조에서 정하는 채무(기한 연장된 경우를 포함)
에 대하여 보증기업과 연대하여 보증책임을 부담하기로 합니다.

② 제1항에 의해 연대보증책임을 부담하는 경우에는 제1조에서 정하는 신용보증약
정서의 각 조항이 적용됨을 승인합니다.

다. 피고 B의 투명경영이행약정 위반

1) 피고 회사는 2017. 6. 9. 이 사건 대출금 중 2억 5,000만 원을 피고 B 명의 개인계좌로
송금하였다.

2) 이에 원고는 피고 B가 투명경영이행약정을 위반하였음을 이유로 피고 B를 이 사건 신용보증약정의
연대보증인으로 추가하는 내용의 신용보증조건변경을 요청하여 피고 B가 2019. 6. 4.경 원고
안산지점을 방문하였다. 피고 B는 당시 연대보증인으로 서명날인하기를 거부하고, 위 2억 5,000만
원의 사용처에 대하여 소명하겠다고 하였으나, 이후 원고와 연락이 끊겼다.

3) 원고는 2019. 6. 21. 피고 B에게 ‘보증부대출의 용도 외 사용으로 인한 투명경영이행약정 위반을
이유로 피고 B가 2019. 6. 3.부터 이 사건 신용보증약정에 대한 연대보증채무를 부담하게 된다’는

내용의 내용증명을 발송하였다.

라. 피고 B, C의 근저당권 설정 등

1) 피고 B는 피고 C에게 피고 B 소유의 유일한 부동산인 별지 목록 기재 부동산(이하 '이 사건 부동산'이라 한다)에 관하여 인천지방법원 2019. 7. 17. 접수 제260927호로 2019. 7. 17.자 설정계약을 원인으로 한 채권최고액 2억 1,600만 원의 근저당권(이하 '이 사건 근저당권'이라 한다) 설정등기를 마쳐주었다.

2) 피고 B는 2019. 7. 17.경 채무초과로 무자력상태에 있었다.

마. 원고의 구상금 채권 취득

1) 피고 회사는 2019. 7. 31. 사업자등록이 폐업신고 되는 신용보증사고가 발생하여 D은 2019. 10. 10.경 원고에게 이 사건 신용보증약정에 따른 보증채무이행을 청구하였다.

2) 원고는 2019. 10. 21. 피고 회사를 대위하여 D에 대출 원리금 264,121,846원(원금 261,000,000원 + 이자 3,121,846원)을 지급하여 이 사건 신용보증약정에 의한 보증채무를 이행하였다. 또한, 원고는 이로 인해 피고 회사에 대하여 취득한 구상금 채권의 집행보전비용으로 2019. 8. 23. 969,370원, 2019. 9. 9. 312,440원 합계 1,281,810원을 지출하였다가 이후 보증료 환급금 등으로 1,202,778원을 돌려받아 집행보전비용 지출액은 합계 79,032원(= 1,281,810원 - 1,202,778원)이 되었다.

【인정 근거】다툼 없는 사실, 갑 제1 내지 17, 19호증(가지번호 있는 것은 가지번호 포함, 이하 같다), 을 제5호증의 각 기재, 이 법원의 연수구청장에 대한 사실조회 결과, 이 법원의 F에 대한 신용정보제출명령 결과, 변론 전체의 취지

2. 피고 회사와 피고 B에 대한 청구에 관하여

가. 청구원인에 대한 판단

위 인정 사실에 의하면 피고 B는 2017. 6. 9. 이 사건 대출금 중 2억 5,000만 원을 피고 B 명의

개인계좌로 송금함으로써 피고 회사 자금을 유용하고, 이 사건 대출금을 당초 정해진 기업일반운전자금 외의 용도로 사용하였으므로 이는 투명경영이행약정 제2조의 자금유용 등의 금지(제4호), 보증서 담보대출의 용도 외 사용금지(제5호), 기타 투명경영에 위반하는 중대한 행위 금지(제7호)를 위반한 것에 해당하고, 원고가 2019. 6. 4.경 피고 B에게 위와 같은 위반 사실을 통지함으로써 피고 B는 투명경영이행약정 제3조 제1항에 따라 피고 회사가 원고에게 부담하는 이 사건 신용보증약정상의 채무에 대하여 연대보증채무를 부담하게 되었는바, 피고 회사와 피고 B는 연대하여 원고가 피고 회사를 대신하여 D에 위 약정상의 보증채무를 이행함으로써 취득한 구상금 채권과 그 집행비용을 지급할 의무가 있다.

나. 피고들의 주장에 대한 판단

1) 주장 요지

피고 B가 2017. 6. 2.까지 피고 회사에 가수금 명목으로 빌려준 돈의 합계가 201,854,777원이 되어 그 돈을 변제받고, 나머지 48,145,223원은 빌리기 위해 2017. 6. 9. 피고 B 명의 계좌로 2억 5,000만 원을 송금받은 것이다. 이후 피고 B는 지속적으로 피고 회사에 가수금을 빌려주어 2018. 5. 31.까지 166,727,000원을 빌려주었다. 따라서 피고 B가 송금받은 돈은 피고 회사 운영자금으로 사용되었으므로 피고 B는 투명경영이행약정을 위반하지 않았다.

2) 판단

피고들이 그 주장의 근거로 들고 있는 을 제2, 6호증은 앞서 든 증거와 을 제1 내지 6호증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에 의하여 알 수 있는 다음과 같은 사정에 비추어 이를 그대로 믿기 어렵고, 달리 피고들이 제출한 증거만으로는 앞서 본 바와 같이 피고 B가 이 사건 대출금 일부를 자신의 계좌로 송금하여 투명경영이행약정을 위반하였다는 판단을 뒤집기에 부족하므로 피고들의 위 주장은 이유 없다.

가) 을 제2호증은 2017. 1. 1.부터 2018. 12. 31.까지의 피고 회사 내부 자료인 계정별원장에 불과하고, 그 기재 내용이 계좌이체내역 등의 객관적인 자료로 뒷받침되지 아니한다.

나) 피고들은 피고 B가 피고 회사 운영 초기에 가수금 내역 등을 제대로 기장하지 못하여

계정별원장이 2017. 1.경부터 작성되었다고 주장하였다(2020. 10. 6.자 준비서면 2쪽). 따라서 피고들이 제출한 2016. 1. 1.부터 2016. 12. 31.까지 계정별원장(을 제6호증) 역시 이를 그대로 믿기 어렵다.

다) 원고는 2019. 6.경부터 피고 B에게 이 사건 대출금 일부가 피고 B 개인계좌로 송금된 것에 대한 소명을 요구하였으나, 피고 B는 그간 별다른 자료제출이나 설명을 한 바 없다.

다. 소결

따라서 피고 회사와 피고 B는 연대하여 원고에게 이 사건 신용보증약정에 따른 구상금 채권의 원리금과 집행비용 합계 264,200,878원과 그중 구상금 채권의 원리금 264,121,846원에 대하여는 원고의 대위변제일인 2019. 10. 21.부터 소장 부분이 피고 회사에 송달된 2019. 11. 27.까지는 약정지연손해금율인 연 8%의, 그 다음날부터 다 갚는 날까지는 소송촉진 등에 관한 특레법이 정한 연 12%의 각 비율로 계산한 지연손해금을 지급할 의무가 있다.

3. 피고 C에 대한 청구에 관하여

가. 피보전채권의 존재

1) 채권자취소권에 의하여 보호될 수 있는 채권은 원칙적으로 사해행위라고 볼 수 있는 행위가 행하여지기 전에 발생한 것임을 요하나, 그 사해행위 당시에 이미 채권성립의 기초가 되는 법률관계가 발생되어 있고, 가까운 장래에 그 법률관계에 터 잡아 채권이 성립되리라는 점에 대한 고도의 개연성이 있으며, 실제로 가까운 장래에 그 개연성이 현실화되어 채권이 성립된 경우에는 그 채권도 채권자취소권의 피보전채권이 될 수 있고, 채권자취소권에 의하여 보호될 수 있는 채권이 성립되리라는 점에 대한 고도의 개연성은 채권자와 채무자 사이의 기초적 법률관계의 내용, 채무자의 재산상태 및 그 변화내용, 일반적으로 그와 같은 상태에서 채권이 발생하는 빈도 및 이에 대한 일반인의 인식 정도 등 여러 가지 사정을 종합하여 객관적으로 판단하여야 할 것이다(대법원 2012. 2. 23. 선고 2011다76426 판결 등 참조).

2) 위 법리를 앞서 인정한 사실에 비추어 살펴보면 피고 B, C의 이 사건 근저당권 설정계약 체결 당시

이 사건 신용보증약정에 따른 원고의 피고 회사와 피고 B에 대한 채권이 발생하지 아니하였지만, 그 성립의 기초인 이 사건 신용보증약정이 체결되어 있었고, 피고 B가 투명경영이행약정에 의하여 이 사건 신용보증약정상의 연대보증채무를 부담하고 있었던 점, 피고 B는 원고로부터 투명경영이행약정 위반에 따른 연대보증 입보를 통보받은 후 얼마 지나지 않은 2019. 7. 17. 피고 C에게 이 사건 근저당권 설정등기를 마쳐준 점, 그로부터 며칠 후인 2019. 7. 31. 피고 회사가 폐업상태가 되는 신용보증사고가 발생하여 원고가 2019. 10. 21. 피고 회사를 대신하여 D에 보증채무를 이행함으로써 실제 구상금 채권을 취득하고, 그 집행보전을 위한 비용을 지출한 점 등에 비추어 보면 이 사건 근저당권 설정계약 체결 당시 원고가 주장하는 구상금 채권 264,121,846원과 위 구상금 채권의 집행보전비용 79,032원에 대하여는 가까운 장래에 원고의 위 각 채권이 성립되리라는 점에 대한 고도의 개연성이 있었고, 실제로 그 개연성이 현실화되었으므로 위 채권 합계 264,200,878원은 원고의 채권자취소권의 피보전채권이 된다.

나. 사해행위와 사해의사

1) 이미 채무초과 상태에 빠져 있는 채무자가 그의 유일한 재산인 부동산을 채권자들 중 1인에게 채권담보로 제공하는 행위는 다른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다른 채권자들에 대한 관계에서 채권자취소권의 대상이 되는 사해행위가 되는 것이고(대법원 2002. 4. 12. 선고 2000다43352 판결 참조), 채무자의 제3자에 대한 담보제공행위가 객관적으로 사해행위에 해당하는 경우 수익자의 악의는 추정된다(대법원 2006. 4. 14. 선고 2006다5710 판결 참조).

2) 피고 B가 앞서 본 바와 같이 2019. 7. 17. 채무초과 상태에서 유일한 재산인 이 사건 부동산을 채권자들 중 1인인 피고 C에게 담보로 제공한 이 사건 근저당권 설정계약은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원고를 포함한 피고 B의 일반채권자들을 해하는 사해행위에 해당하고, 피고 B의 사해의사도 인정되며, 수익자인 피고 C의 악의는 추정된다.

3) 이에 대하여 피고 C은 이 사건 근저당권 설정계약 체결 당시 피고 회사가 무자력 또는 채무초과 상태에 있음을 알지 못하고 이 사건 근저당권을 설정한 것이어서 자신은 선의의 수익자에 해당한다고 항변하나, 피고 C이 제출한 증거만으로는 이를 인정하기에 부족하므로 피고 C의 위 항변은 이유

없다.

다. 사해행위의 취소와 원상회복

위에서 본 바와 같이 피고 B와 피고 C 사이의 이 사건 근저당권설정계약은 사해행위로서 취소되어야 하고, 그 원상회복으로서 피고 C은 피고 B에게 이 사건 근저당권 설정등기를 말소할 의무가 있다.

4. 결론

그렇다면 원고의 피고들에 대한 청구는 모두 이유 있어 인용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재판장 판사 김정숙, 판사 최정윤, 판사 변이섭

[별지]

부동산의 표시

(1동의 건물의 표시)

인천 연수구 G에 있는

H아파트 I동

[도로명주소]

인천 연수구 J

철근콘크리트구조 (철근)콘크리트지붕 30층 공동주택

(전유부분의 건물의 표시)

건물의 번호 : K

구 조 : 철근콘크리트구조

면 적 : 제6층 L호 84.8682㎡

(대지권의 표시)

토지의 표시 1. 인천 연수구 G 대 30721.7㎡

대지권의 종류 1 소유권대지권

대지권의 비율 30721.7분의 42.9400

끝.